

##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06. 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자격) ① 본 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학위과정(이하 ‘복수학위과정 등’이라 한다.)을 이수하고자 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대학 복수학위과정 등의 경우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2. 본 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대상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학생
- ② 본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타 대학 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1년 이상을 수료하고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3조 (주관부서) 복수학위과정 등의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주관부서에서 진행한다.

1.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등의 협약에 관련 된 사항은 국제교육처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2. 국내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등의 학사관련 제반사항은 교학처에서 관련 업무를관장한다.

제4조 (선발절차) ① 복수학위과정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학과(부)장은 지원자의 수강계획 등을 검토하여 해당과정 이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 ② 각 주관부서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③ 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복수학위과정 등의 이수자를 승인한다.

제5조 (수학기간) 해당과정의 수학기간은 본교와 대상 대학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교육과정 운영) 대상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각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취득을 상호 인정하여 참여대학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2.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여 참여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3.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개설·운영하는 대학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참여대학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4. 기타 총장이 승인하고 대상 대학과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

제7조 (수강계획 허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록 학기의 인정) 허가 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본 대학교 또는 대상 대학에 등록을 하면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 및 등록 학기로 인정한다.

제9조 (학점의 인정) ① 외국대학과 복수학위과정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기준 전체 학점의 4분의 3 범위 내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체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대상 대학의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학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부)에서는 제4조 2항 각 호에서 정한 관련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학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수학위과정 등으로 이수한 학점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10조 (등록금 및 장학지원) ① 등록금은 본 대학교와 대상 대학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대학에 납부한다.

② 등록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중도포기) ① 복수학위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한 관련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학생은 복수학위과정 등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학위과정 등 중도에 포기한 학생의 학점인정 및 졸업관련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학위수여)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대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 대학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13조 (보칙) 이 외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